

特别企画人りづ

아시아地域工業所有權制度

- 이 글은 最近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서 아시아地域 각국 特許廳.....○
-을 통하여 調査, 發刊한 「THE SITUATION OF INDUSTRIAL PROPE.....○
-RTY IN THE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를 基本 資.....○
-料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 第9回 ◎

● 泰 國 (1) ●

I. 工業所有權

1. 法 律

(a) 現行國內法

(i) 發 明

▲ 特許法(1979)

• 特許法에 관한 施行令(1979)

• 手數料에 관한 施行令 第2號 (1979. 10. 29)

• 審査節次에 관한 施行令 第3號 (1980. 11. 21)

• 特許의 形式에 관한 施行令 第4號 (1981. 11. 12)

• 職務發明補償과 관련된 規定 및 節次에 관한 施行令 第5號 (1981. 11. 12)

• 規定과 手數料의 欄면과 관련된 規定 및 節次에 관한 施行令 第6號 (1981. 11. 12)

(ii) 意匠 : 發明에 관한 法律과 同一

(iii) 標 章

▲ 商標法(1931), 1961年 商標法(No. 3)로 改正

▲ 商標法(No. 1, 1961)에 관한 施行令

▲ 刑法 (1908)

▲ 商法에 대한 商務省長官令 (1977. 7)

(iv) 其他 工業所有權

▲ 하위 표지 商品 輸入禁止法(1939. 4. 13)

▲ 포루투갈 포도주의 國內 原產地 표기에 관한 法律
(1939. 4. 19)

(v) 消費者 保護

▲ 消費者保護法 (1979)

- 所管部處의 指定에 관한 施行令(1979. 9. 17)
- 法 第43條에 근거한 소송에 관한 施行令 第2號 (1981. 4. 22)
- 法 第22條 2(5)號에 근거한 廣告의 項目 및 形態에 관한 施行令 第3號 (1983. 4. 19)
- (vi) 現行法律의 改正 : 商標法의 改正作業이 進行中에 있다.

(b) 條約加入

- (i) 多者間 國際條約 : 情報가 없음.
- (ii) 雙方間 國際條約 : 中國과 商標의 相互保護을 위한 協定

(c) 特許 및 發明保護을 위한 其他 名稱들의 主要規定

(i) 名 稱

▲ 發明特許(特許法 第3 및 5條)

(ii) 保護를 받기 위한 要件

○ 新規性

新規의 發明이어야 特許를 받을 수 있으며 일 반적 인 新規性基準이 適用된다. 發明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되거나 않는다면 新規한 것으로 본다(法 第5(1) 및 6條).

- ① 特許出願前에 國내에서 公知 또는 公用된 發明
- ② 特許出願前에 國내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發明

③ 特許出願前에 國내 또는 國外에서 特許받은 發明

④ 國내에서 特許出願하기 12個月以上前에 國外에서 出願된 發明으로서 特許받지 못한 發明

⑤ 國내에 特許出願한 發明으로서 出願인이 그 出願을 포기한 發明

▲ 無權利者의 不法의인 許특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公開나 發明者가 自己의 發明을 國際展示會나 公共機關
關聯이 주관한 展示會의 出品함으로써 公開되었을 경우
180日內에 特許出願을 하면 新規性 판단을 위한 公開
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法 第6條).

▲ 國內에서 개최되고 政府主管 또는 후원을 받은 展示會에 自己의 發明을 展示한 者가 展示日로부터 180
日以内에 特許出願을 할 경우에는 그 展示日에 特許出
願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法 第19條).

♡ 發明段階(進歩性)

發明이 特許를 받기 위해서는 進歩性이 있어야 하며,
該當技術分野의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보아 明白하
지 않다면 進歩性이 있다고 본다(法 第5(2) 및 7條).

♡ 產業上 利用可能性

發明이 特許를 받기 위해서는 產業上 利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發明이 手工業, 農業 및 商業
을 包含한 各 產業分野에서 製造 또는 使用될 수 있는
것이라면 產業上 利用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본다(法
第5(3) 및 8條).

(iii) 保護를 받을 수 없는 發明(法 第9條)

▲ 음식물 또는 醫藥

▲ 農事用으로 特別히 제조된 機械

▲ 動・植物의 變種 또는 動植物의 生產에 關連적인
생물학적 方法

▲ 科學的 또는 數學的 規則이나 理論

▲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 公共秩序・善良한 風俗 또는 公衆의 衛生이나 복
지에 反하는 發明

(iv) 外國에서 한 出願이나 許특한 特許의 效
力: 規定이 없음.

(v) 公開의 範圍

特許出願書에는 該當分野 또는 密接한 關聯이 있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그 發明을 實
施할 수 있을 정도로 完全하고 간결하고 정확・명료하
게 그 發明의 細部의in 說明을添附하여야 하며, 實例
및 關聯先行技術이나 圖面을 덧붙임으로써 發明者가
自己의 發明을 實施하기에 가장 適合한 정도로 開示되
어야 한다.

상세한 說明에는 그 發明의 關聯技術分野와 그 發明
의 理解, 調查 및 審查를 위해 유용한 關聯先行技術이
記載되어야 하며 關聯文獻도 인용하여야 한다. 또한
그 發明이 性質上 明確하지 않은 경우에는 工業, 手工
業, 農業 또는 商業에 어떤 方법으로 利用할 수 있는

가를 개진하여야 한다(法 第17(3)條, 施行令 第2(2),
(3), (4), (6) 및 (7)條).

(vi) 特許節次: 公告

▲ 特許出願이 되면 먼저 方式審查와 不特許 發明에
대한 法律審查를 받게 되며, 그런 후에 異議申請을 위해
公告된다. 異議申請은 公告日로부터 180日 以內에 할
수 있다. 實體審查(遷延審查)를 받기 위해서는 出願人
이 審查請求를 하여야만 되는데 公告日로부터 5년 以內
또는 異議申請 및 그에 대한 訴訟이 있을 때는 最終結
定日로부터 1年 以內의 期間內에 할 수 있다(法 第24,
28, 29 및 31條; 施行令 第3號 1, 2, 3 및 5條).

▲ 同一한 發明을 가지고 外國에 特許出願한 者는 外
國에서의 調査 또는 審查의 結果가 出願을 위해 유용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를 提出하
여야만 한다. 그밖에 商業登錄局長은 政府 部處, 團體
및 機構 또는 外國의 國際特許廳이나 機構에 該當出願
書나 그의 說明 또는 實體에 대해 審查를 要請할 수도
있다. 그러한 審查는 審查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法 第25 및 27條; 施行令 8(6) 및
(7)條; 施行令 第3號 7條).

▲ 異議申請節次와 實體審查가 끝나면 特許查定이 되
고 그에 따라서 設定登錄된다(法 第23條)

(vii) 獨占權의 範圍

▲ 特許權者는 特許品의 製造, 特許받은 方法의 使用,
또는 特許品이나 特許받은 方法을 사용하여 製造한 物
品의 販賣에 대한 獨占權을 가진다.

▲ 特許權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위해 特
許品 또는 特許받은 方法을 使用하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法 第36條)

· 研究・實驗 또는 分析目的으로의 使用

· 出願公告前에 善意로 그 發明을 製造했거나 製造
를 위한 事業設備를 갖추고 있던 者에 의한 實施

· 善意로 許특한 特許品의 販賣 또는 販賣를 위한
所持

▲ 特許權者는 自己의 特許發明이 國內에서 實施되기
前이거나 規定된 規則 및 節次에 따라 特許物品의 製
造를 위한 準備가되기 前에는 그 特許와 關聯된 物品
의 輸入을 방해하지 못한다(法 第77條).

▲ 共同權利者間에 反對規定이 없다면 他權利者의 同
意없이도 獨占權을 행사할 수 있다. 但, 實施權許與나
讓渡의 경우에는 他權利者의 同意를 얻어야만 한다(法
第40條).

■ 아시아地域 工業所有權制度 ■

(viii) 存續期間 및 維持

▲存續期間：出願公告日로부터 15年間(法 第35條)

▲維持

特許權을 存續시키기 위해서는 年次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年次料를 未納할 경우에는 特許權이 消滅된다.

最初 年次料는 特許存續期間 5次年度의 60日 以內에 納付하여야 하며, 出願公告日로부터 5次年度 以後에 特許가 許與된 경우에는 特許를 받을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最初 年次料를 納付하면 된다.

年次料는 納付期間 經過後 180日 以內에 과태료와 함께 追納할 수도 있다(法 第43 및 44條).

(ix) 實施義務：非自發의 實施權許與 및 其他節次

▲一般 規定

· 어떤 特許品이나 特許를 받은 方法이 國內에서 製造 또는 使用되기 前에는 누구라도 그 特許와 關聯된 製品을 輸入할 수 있다. 但, 特許權者が 自己의 特許 받은 物品의 製造를 위한 準備를 完了한 후에 그려한 輸入을 禁止시켜 달라는 要請이 있으면 輸入을 禁止할 수도 있다(法 第77條).

· 特許品을 製造하였을 때에는 그 製造業者는 關係機關에 이 事實을, 通知하여야 하며 그 事實에 대한 調査가 끝나면 官報에 實施內容이 記載된다. 官報의 發刊後 60日 經過한 後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그 特許와 關聯된 어떠한 製品도 輸入할 수 없다(法 第77條).

▲強制實施權許與

特許許與日로부터 3年이 經過한 後에는 언제라도 누구나 商業登錄局長에게 強制實施權許與를 申請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特許權者が 強制實施權許與를 申請한當時에 正當한 理由 없이 國내에서 特許品을 生產하지 않거나 特許받은 方法을 使用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特許받아 生產한 製品을 國內市場에서 販賣를 하지 않거나 不當하게 高價로 販賣를 하거나 公共의 需要를 充足하지 못했을 경우이다(法, 第46條).

▲取消

特許許與後 6年이 經過한 後에도 正當한 理由 없이 實施(前項 強制實施權許與参照)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商業登錄局長은 抗告審判所에 그 特許의 取消請求를 할 수 있다(法, 第55條).

▲輸入 實施權許與

特許와 關聯한 製品이 國民의 需要在 充足하지 못할 때에는 누구나 特許抗告審判所에 그려한 製品의 輸入을 위한 實施權許與를 申請할 수 있다(法 第77條).

▲權利의 實施權許與

어떠한 特許權者라도 自己의 特許權에 대한 實施權을 누구에게라도 許與할 수 있다는 취지를 登錄原簿에 登載해줄 것을 商標登記局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그러한 登載가 된 후라면 언제라도 商標登記局長은 特許權者와 實施權許與를 받고자하는 者間에 合議된 條件, 制限, 로열티로 實施權許與를 申請을 하는 者에게 實施權을 許與할 수 있다. 만일 商業登記局長이 指定한 期限內에 特許權者와 申請者間에 合議가 이루어져지지 않을 경우에는 商業登記局長職權으로 適當하다고 생각되는 條件으로 實施權을 許與할 수 있다(法 第45條).

▲從屬特許

어떤 特許의 實施로 말미암아 他人의 特許權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特許를 實施하고자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경우에 商業登記局長에게 他人의 特許權에 대한 實施權許與를 申請할 수 있다.

· 그러한 實施權의 許與가 他特許權者 또는 그의 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그 特許를 實施하는데 不當하거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 그러한 實施權許與를 申請한 特許權者的 發明이 國家經濟 또는 公共의 需要에 重要하다고 判斷될 때

· 他特許에 대한 實施權을 許與받아야만 自己의 特許를 實施할 수 있는 경우

▲政府에 의한 實施

政府의 各部處는 언제라도 公衆의 消費, 國家防衛에 關히 重要하거나 天然資源·農業·工業發展을 위한 調査研究 및 其他 公共의 利益을 추구하기 위하여 特許權者나 그의 專用 實施權者에게 一定한 代價를 지불함으로써 필요한 特許發明을 實施할 수 있다(法 第51條).

政府는 戰時 또는 非常時에 國家防衛나 安全에 필요한 特許發明을 實施할 權限을 가진다(法 第52條).

(x) 讓渡 및 實施權許與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승계인에게 양도 또는 移轉할 수 있다(法 第10條).

▲特許權者는 他人에게 特許權을 讓渡할 수도 있고 實施權을 許與할 수도 있다(法 第38條).

▲實施權許與契約은 書面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商業登記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法 第41條).

(xi) 職務 發明

雇用契約 또는 어떤 業務를 執行하게 한 契約에 따른 業務遂行으로 完成한 發明의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契約上 別途의 規定이 없는한 雇用人 또는 業務를 맡긴 者에게 귀속된다. 雇用契約上 被用者가 發

明活動을 하도록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被用者가 雇用中自己處分에 맡겨진 어떠한手段, 데이타 또는 보고서를 利用하여 發明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適用된다(法 第11條).

▲職務發明을 한 被用者は 그 發明으로 인하여 雇用者가 利益을 본 경우에 定規 봉급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補償은 어떠한 契約上의 規定에 의해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補償을 위한請求는 商業登錄局長에게 할 수 있으며 商業登錄局長은 이를 決定할 權限을 가진다(法 第12條).

▲公務員 및 政府機關・投資企業 任職員사이에 發明活動을 장려하기 위하여 公務員 및 政府機關・投資企業의 任職員들도 規則이나 施行令으로 別途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個人職務發明家와 같이 補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法 第13條).

(d) 意匠에 關한 主要規定

(i) 保護客體

製品의 외모에 특징을 주는 線이나 色彩의 形式 또는 構成으로서 明確하고 工業 또는 手工業製品을 위한 圖案으로 利用되는 디자인.

意匠은 特許로 保護받는다(法 第3 및 56條).

(ii) 保護를 받기 위한 要件

新規性 및 產業上 利用性이 要求되어 一般的인 新規性 基準의 適用을 받는다. 다음의 意匠은 新規하지 않

은 것으로 간주한다. (法 第57條)

- 出願前 國內에서 公知・公用된 意匠
- 出願前 國內 및 國外에서 油印된 刊行物에 게재된 意匠

• 出願前에 公知된 意匠

• 위에서 언급한 의장과 극히 유사한 意匠

(iii) 保護를 받을 수 없는 意匠

公共秩序나 善良한 風俗에 反하는 意匠(法 第58條)

(iv) 登錄節次：公告

出願이 되면 方式審查와 實體에 관한 지연심사를 받으며 出願公告後 180日 以內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異議申請節次 및 實體審查가 完了되면 意匠特許查定이 되고 따라서 設定登錄된다.

發明特許에 관한 關聯規定이 意匠特許에도 準用된다(法 第27, 28, 29, 31, 33, 61 및 65條).

(v) 獨占權의 範圍

▲意匠特許받은 物品의 製造 및 販賣를 獨占할 權利를 가진다. 그러나 研究를 目的으로 意匠特許를 製造하거나 善意로 獨占한 物品의 販賣 또는 販賣를 위해 所持한 者에게는 獨占權이 미치지 않는다(法 第63條).

(vi) 存續期間 및 維持

▲出願日로부터 7年間(法 第62條)

▲年次料規定은 發明特許에 대한 規定에 準用한다. (法 第43, 44 및 65條) <계속>

(案) 月刊「發明特許」, 稿募集 (内)

本誌는 讀者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工業所有權 專門誌입니다. 本誌는 製作에 讀者 여러분의 幅넓은 參與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工業所有權에 관한 內容이면 무엇이든 歡迎합니다. 많은 投稿 바랍니다.

- ◎ 論文 : 200字 原稿紙 20~50枚 (번역문포함)
- ◎ 우리社의 特許管理 : 15~30枚 내외
- ◎ 發明成功事例(職務發明 우대) : 30枚 내외 (추후 단행본으로도 製作됨)
- ◎ 나의 提言 : 10枚 내외 (工業所有權法 改善사항에 한함)
- ◎ 工業所有權 수필 : 10枚 내외 (外國視察記포함)
- ◎ 기타(社內消息, 新製品 紹介)
- ◎ 接受期限 : 수시접수
- ◎ 接受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查部 「月刊 發明特許」 編輯室